

의안번호	제29호
------	------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3. 16.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 안 번호	제29호
--------------	------

제출연월일 : 2022. 3. 16.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언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 아래와 같음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	국공립 양촌어린이집(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아동복지돌봄과	
2	양촌면 임화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산림공원과	
3	가야곡면 육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안전도로과	

- 2022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사업별개요참조					

○ 2022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면적				
		해 당 없 음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 재 지	토지 면적	기준가격	비고
취득	3건		7,217	172,232	
	국공립 양촌어린이집(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양촌면 인천리 78번지	1,988	80,339	
	양촌면 임화리 싹지공원 조성 사업 공유재산 취득	양촌면 임화리 385번지 외1	2,082	35,107	
	가야곡면 육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가야곡면 육곡리 179-1번지 외2	3,147	56,786	
처분	0건				
	해당없음				

4. 사업별 개요

① 국공립 양촌어린이집(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 취득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38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자 신청한 「금융산업공익재단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신축 이전 부지 취득

- 용도: 어린이집

○ 사업기간: 2022. 3. ~ 2023. 6.

○ 취득위치: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78번지 (1,988㎡)

○ 소요예산: 2,405,600천원

⇒ 공모지원금 1,000,000천원, 시비 1,405,600천원

(단위: 천원)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비고
2,405,600	350,000	1,944,000	111,600	

○ 사업규모 및 주요시설

- 대지면적 약 1,988㎡, 신축면적 약 462㎡, 어린이집 등

■ 취득재산 대상내역: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비 고
	구분	지목	소재지	면적		
1	토지	답	양촌면 인천리 78번지	1,988	80,339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2. 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리계획 시 의회 상정(안) 의결
- 2022. 3.: 감정평가
- 2022. 4.: 토지 보상협의 및 취득
- 2023. 6: 양촌어린이집 준공 완료

<담당자 현황>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	746-5860	
보육지원팀장	임수경	746-5871	
담 당 자	최지혜	746-5872	

취득재산 현황(위치도)

■ 위치도

소재지: 양촌면 인천리78번지(사유지, 1,988㎡, 약 600평)



② 양촌면 임화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 취득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쌈지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녹색 쉼터 공간 제공을 위한
토지 취득

- 용도: 쌈지공원 2,082㎡ 조성

○ 사업기간: 2022. 1. ~ 2022. 6.

○ 취득위치: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85번지 외 1필지 (2,082㎡)

○ 소요예산: 180,000천원(시비 100%)

(단위: 천원)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비고
180,000	35,107	138,733	6,160	

○ 사업규모: 쌈지공원 2,082㎡ 조성

□ 취득재산 대상내역: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면적		
			2필지	2,082	35,107	
1	토지	답	양촌면 임화리 385	942	16,297	
2	토지	전	양촌면 임화리 386	1,140	18,810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2.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2. 3.: 관리계획 시 의회 상정(안) 의결
- 2022. 3.: 감정평가 의뢰 및 토지매입
- 2022. 4.: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22. 5.: 공사 착공
- 2022. 6.: 공사 준공

<담당자 현황>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산림공원과장	김종진	746-6130	
공원팀장	김영선	746-6161	
담당자	전은경	746-6163	

③ 가야곡면 육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취득 개요

-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이용객에게 주차편의 제공
 - 용도: 공영주차장(A=3,147㎡)
- 사업기간: 2022. 3. ~ 2023. 12.
- 취득위치: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179-1번지 일원
- 소요예산: 500,000천원(시비 100%)

(단위:천원)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비고
500,000	250,000	240,000	10,000	

-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조성(A=3,147㎡, 주차면수 약 80면)

■ 취득재산 대상내역: 토지

(단위:㎡, 천원)

연번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면적		
			3필지	3,147	56,786	
1	토지	전	가야곡면 육곡리 179-1	1,048	17,816	
2	토지	전	가야곡면 육곡리 179-3	661	10,642	
3	토지	전	가야곡면 육곡리 180	1,438	28,328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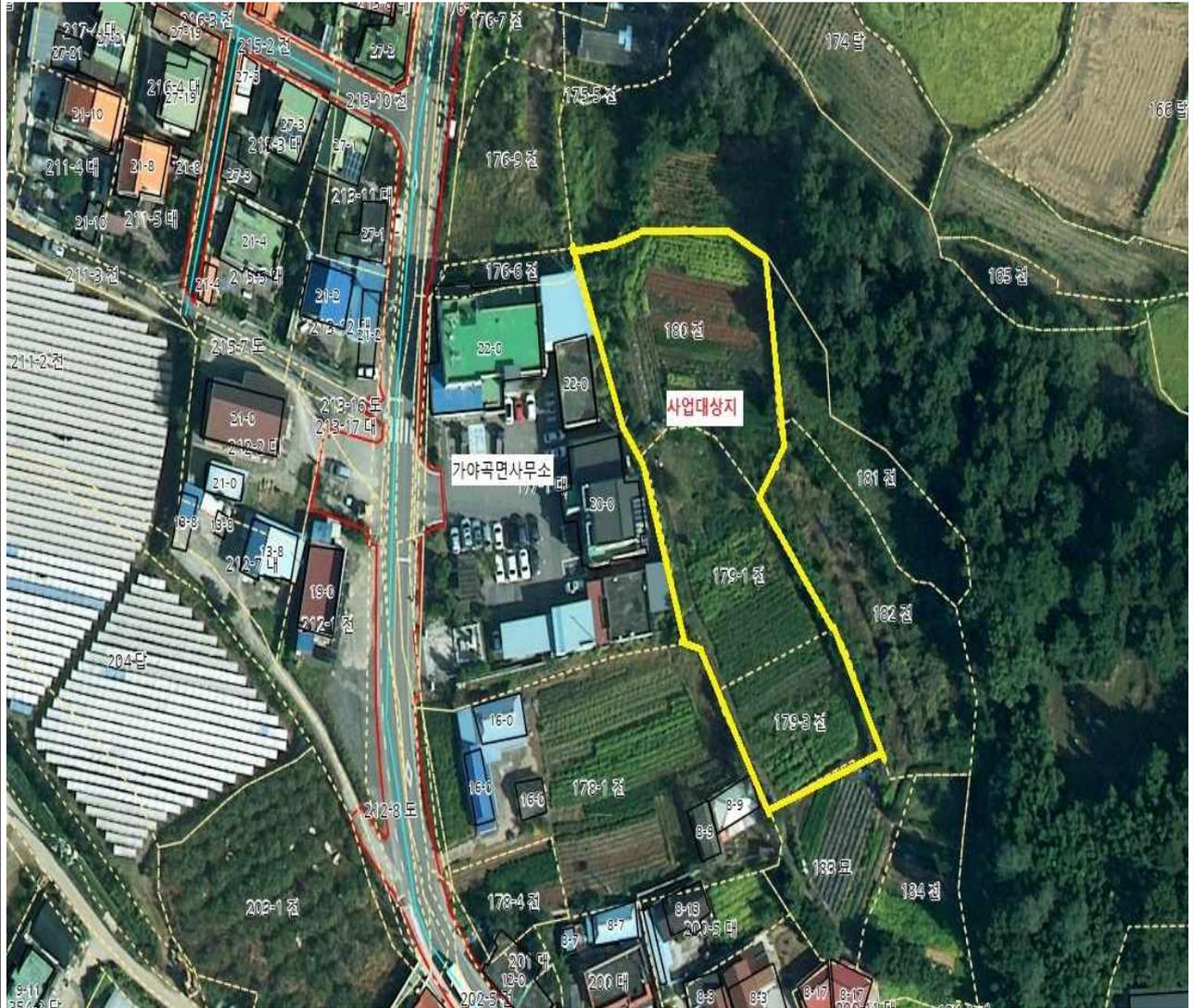
- 2022. 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관리계획 시 의회 상정(안) 의결
- 2022. 4.: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 2022. 5.: 보상협의 추진
- 2022. 9.: 설계용역 착수
- 2023. 12: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담당자 현황>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안전도로과장	김용신	746-6260	
교통시설팀장	박재욱	746-5183	
담당자	박종서	746-5791	

취득재산 현황(위치도)

위치도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